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관리시설(지역) 대응 가이드라인

<재난대응 기본방향>

◆ 모든 재난대응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

자연재난과

목 차

공통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통사항	1
1. 하천 분야	2
- 하천변 산책로·진출입로	
- 하천 공사장	
2. 산사태·급경사지 등 토사재해 분야	4
- 산사태 분야	
- 급경사지(노후 공동주택 옹벽 등) 분야	
3. 지하공간 대책 분야	7
- 반지하 주택	
- 지하차도	
4. 폭염대비 체육행사 분야	9
- 체육행사	

공통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요령

1 시·군 재대본 발령 시

- (근무전파) 道-시·군 자연재난단체 카톡방을 통해 근무상황 공유
 - (보고양식) 00시·군 / 비상단계 / 발령시각 / 근무인원 / 읍면동 지원인력
ex) 수원시 / 비상1단계 / 6.20. 18:00 / 84명 / 108명
 - (변경보고) 비상단계 변경 및 근무·읍면동 지원인력 변경 시 변경 보고
ex) (변경) / 수원시 / 비상2단계 격상 / 6.21. 03:00 / 150명 / 250명
- (상황입력)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근무상황 입력 (붙임 내용 참고)
 - 홈페이지 → 상황대응 → 중대본(지대본) 상황관리 → 지자체 대처상황관리 → 재난명 선택 → 해당 재난명 클릭 → 대처상황 등록(호우·태풍)
 - ※ 호우·태풍_주요대처상황 / 상황근무(명) / 비상근무돌입일시 입력 후 저장

2 道 재대본 즉시 보고사항 (도-시·군 단체카톡방 또는 메신저)

- (사전대피) 산사태, 저수지 월류, 하천 범람 예상 등 징후 발생으로 인한 주민 사전대피 실시사항 道 재대본 즉시 공유
 - 사전대피 실시 위치(지역), 대피 세대 수, 대피 인원, 대피장소를 포함하여 사전 공유하고, 보고서 생산 시 道 재대본 보고(공유)
- (통제현황) 도로, 지하철도, 둔치주차장 등 통제발생 시 道 재대본 즉시 공유
 - 통제 위치, 통제 원인, 통제 시각, 해제 예정시점을 포함하여 사전 공유, 보고서 생산 시 道 재대본 보고(공유)
- (인명피해) 인명피해 발생 시 道 재대본 즉시 공유
 - 발생 위치, 인원(기본적인 신상내역 포함), 사고 발생 사유, 추진경위 등을 포함하여 道 재대본 보고(공유)
 - ※ 특히, 인명피해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기 전에 道 재대본에 공유 요청

3 호우·태풍 대처 상황보고서 공유

- 시·군 재대본 구성·운영 시 생산되는 호우 대처 상황보고서 道 재대본 공유
 - 가능한 체크리스트 제출 시점(04시, 09시, 16시, 21시)과 보고서 생산시간을 일치하여 道 재대본 공유 요청
 - ※ 보고서 공유 시 사진(점검, 사고, 피해, 대피 등) 함께 공유, 체크리스트는 별도 안내

1 하천 분야

1 하천변 산책로·진출입로

(단위 : 개소)

총 계	자동차단 (상황실 통제)	수동차단 (현장 리모컨, 블라드 등)	시설없음 (안전선 설치)
道	5,549	1,271	1,026
○○시			3,252

※ 2,502개 하천(국가 20, 지방 498, 소 1984)의 하상도로·세월교·산책로 포함한 진출입로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차단·통제) >

- (자동차단^{1,271}) 기상특보 발효 즉시 차단
- (수동차단^{1,026}, 시설없음^{3,252}) 기상특보 발효 12시간 前* 차단
 - * 예비특보 발표 최선시간 12시간 전(예비특보 14시~18시의 경우, 14시 12시간 전 02시)
 - 차단 테이프 3중(≧) 설치 등 공무원·민간 조력자 사전 교육·안내

< 00시·군 대응 가이드라인(예시) >

- ◆ 하남세월교 : 하남시 건설과 000(031-5182-1060)로 전화
- ※ 가이드라인 외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예비특보 발표 시

- (자동차단^{0개소}) 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 (수동차단^{0개소}, 시설없음^{0개소}) 기상특보 발효 12시간 전 차단 실시
- ※ 차단 테이프 3중(≧) 설치 사전 교육·안내 실시 후 차단 실시

② 기상특보 발효 시

- (자동차단^{0개소}) 즉시 차단

③ 기타 추가 사항(필요시)

- (모니터링) CCTV 등을 통해 실시간 감시 (전담인력 0명)
- (현장대응) 출동상황을 대비하여 인력 0명* 대기
- * 하천부서 0명, 읍면동 지원인력 0명, 수로원 0명 등

② 하천 공사장

(단위 : 개소)

구분		총 계	지방하천	소하천	비고
道	하천공사장	33	24	9	도 10, 시군 23
〇〇시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 >

- (예비특보 발표시) 담당 공무원은 공사장 예찰 후 조치내용 등 상황보고*
 - * 담당 공무원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 현장 내 가시설, 자재, 장비 등 안전조치 및 유수소통 지장물 확인, 주변 비닐덮개, 모래마대 설치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작성
- (시우량 30mm ↑) 현장 책임자(감리, 소장)는 현장주변 예찰 후 활동 내용 보고*
 - * 현장 책임자 → 시·군 하천부서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 △ 통제 여부(차단테이프 설치 등) △ 유수소통 지장물 조치 내용 등을 호우주의보 3시간, 호우경보 1시간 간격으로 현장 예찰 후 상황보고

< 〇〇시·군 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

- ◆ 풍동천 정비사업 : 고양시 생태하천과 000(031-8075-6253)로 전화
- ※ 가이드라인 외 공사현장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예비특보 발표시

- 공사 중지,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조치, 일일 예찰 계획 수립
 - 가시설, 자재 등 정비 및 예찰 계획* 확인 (현장소장 → 공사 관리관)
 - * 호우주의보는 2시간 간격, 호우경보는 1시간 간격 예찰 인력 편성·운영
 - 현장 출입 통제를 위한 안내표지판, 차단 테이프 등 설치 실시
- (공사장 주변) 유수소통 지장물, 공사 자재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요소 확인
 - 비닐덮개, 모래마대 설치 등 공사장 내 토사, 자재 등 휩쓸리지 않도록 조치

② 시우량 30mm ↑

- (공사장·주변) 일일 예찰 계획에 따라 현장 상황 점검 실시
 - 현장 점검 사진 등 소통방(SNS)을 통해 실시간 상황공유
 - 이상징후 발견 시 소통방(SNS)을 통해 즉시 보고 후 응급조치 시행

2 산사태·급경사지 등 토사재해 분야

1 산사태 분야

(단위 : 개소, 명)

구분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우선대피대상자	대피조력자	대피소
道	2,441	11,244	조사중(5월)	1:1 매칭	1,035
〇〇시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 >

- ◆ ①산사태 예측정보, ②기상특보 및 강우량을 토대로 Two-Track 상황관리
- ◆ 산사태 취약지역별로 ‘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대응활동 추진
 - * 이·통장, 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원인력,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예측정보^{산림청}에 따른 상황관리]

- 산사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예측정보 알림시 단계별로 부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산사태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대피여부 등 검토
 - * 지질특성, 산사태 이력, 토양내 빗물의 양에 따른 토양함수지수 80%, 90%, 100%

[강우량 및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

- (1단계) 선행강우(24hr 140mm or 48hr 160mm) & 90mm ↑ 예보시
 - 마을순찰대가 직접방문하여 ①행동요령 배포 및 ②사전대피 권유 실시 (일 2회)
 - ※ 주민대피 시 임시주거시설 외 숙박시설 이용시 숙박비 및 식비 지원 등을 안내하여 사전대피 권유 (숙박비 1일 70천원 / 식비 1식 9천원)
 - 읍면동 직원은 우선대피 대상자에게 직접 유선전화(안부 등) 실시 (일 2회)
- (2단계) 선행강우(24hr 140mm or 48hr 160mm) & 호우경보 시
 - ‘부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사전대피 권고’ 실시
 - 사전대피 권고 결정 시 대피도우미, 경찰, 소방 합동 현장 대피 권고
- (3단계) 선행강우(24hr 140mm or 48hr 160mm) & 호우경보 8시간 이상
 - ‘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명령’ 실시여부 검토
 - ※ 대피거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피해발생시 복구비 제외 고지

- ❖ 대피 명령과 해제 판단시 필요한 전문성, 주민 신뢰도 및 그에 따른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시 시·군별 지역 민간전문가 사전현장 확인 및 의견 정취

< 00시·군 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

◆ 가평 설악면 화곡리 : 가평군 산림과 000(031-580-2383)

※ 가이드라인 외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산사태 예측정보 주의보 시

- (상황판단회의) △산사태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대피대상 문자(CBS) △대피준비
- ※ 상황판단회의 결과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예찰활동) 산사태현장예방단, 이·통장, 자율방재단, 읍면동 현장지원인력 0명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0개소 예찰, 사전대피 권유 실시(0세대, 0명)
- 대피소 0개소 점검 및 구호물품 0개 사전배치 등

<강우량 등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선행강우 24시간 140mm or 48시간 160mm & 예상강수량 90mm ↑
 - 산사태 취약지역 0개소 예찰, 주민 사전대피 권유(예찰인력 → 주민 0명)
 ※ 예찰은 오전에 실시하고 사전대피는 일몰 전 실시 권유

② 산사태 예측정보 예비경보 시

- (상황판단회의) △산사태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대피대상 문자(CBS) △사전대피
- ※ 상황판단회의 결과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예찰활동) 산사태현장예방단, 이·통장, 자율방재단, 읍면동 현장지원인력 0명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0개소 예찰, 사전대피 권유 실시(0세대, 0명)
- 산사태 인명피해우려지역 0개소를 중심으로 현장예찰 강화

<강우량 등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선행강우 24시간 140mm or 48시간 160mm & 호우경보 발표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사전대피 실시 (시·군 → 주민 0명)

③ 산사태 예측정보 경보 시

- (상황판단회의) △산사태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대피대상 문자(CBS) △대피명령
- ※ 상황판단회의 결과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예찰활동) 산사태현장예방단, 이·통장, 자율방재단, 읍면동 현장지원인력 0명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0개소 예찰
- 산사태 인명피해우려지역 0개소를 중심으로 현장예찰 강화

<강우량 등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선행강우 24시간 140mm or 48시간 160mm & 호우경보 8시간 이상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주민대피 실시 (시·군 → 주민 0명)

② 급경사지·공동주택 노후옹벽

(단위 : 개소)

계	인명피해우려지역(급경사지)		공동주택 노후옹벽
	붕괴위험지역	위험사면	
道	36	86	조사중(~5월)
○○시			

※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주차장, 놀이터 등) 인접 급경사지: 9개 시·군 35개소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 >

○ (예비특보 발표시) 현장 정비·점검 후 상황보고*

- * 담당 공무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 배수로 막힘 정비(낙엽, 토사 등), 지반상태 등 현장의 위험요소 점검
- (호우특보시) 호우주의보 발령시 가급적 현장 통제, 호우경보시 의무통제
- 급경사지·노후옹벽 주변 보행공간 통제 실시(통제선, 라바콘 등)

○ (급경사지 인명피해우려지역¹¹²) 대피 필요 지역은 산사태 2·3단계를 준용

- (2단계) 선행강우(24hr 140mm or 48hr 160mm) & 호우경보 시
- ‘부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사전대피 권고’ 실시
- (3단계) 선행강우(24hr 140mm or 48hr 160mm) & 호우경보 8시간 이상
- ‘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명령’ 실시여부 검토

< 00시·군 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

◆ 남양주 00단지 : 남양주시 주택과 000(031-590-4445)

※ 가이드라인 외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예비특보 발표시)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예찰활동 실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0개소를 중심으로 예찰활동* 실시
- * 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원인력 0명 등
-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0건, 덮개 설치 0개소 등 조치결과 보고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0개 단지) 비상연락망을 통해 예찰활동 지시

② (집중호우시) 통제 현황 시 재대본 보고(道 재대본 전파)

- (현장통제) 산사태 상황관리 2단계 기준시 통제 실시 후 상황보고
-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주변 0개소 통제 실시
- ※ 세이프라인 설치, 라바콘 설치
- (공동주택) 0개 단지 내 옹벽 주변 차량·보행공간 통제 0개소 실시

3 지하공간 분야

1 반지하 주택

(단위 : 개소, 명)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 가구(10년)	우선대피대상자	대피도우미[민간+공무원]
道 7,622	1,002	2,406 (전담 공무원 999명)
〇〇시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 >

- (예비특보 발표시) 대피도우미 비상연락 체계 및 응소 가능여부 점검
 - 읍면동 직원은 대피도우미 우선전화를 통해 대피활동 가능성 안내
 - 수방자재(차수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워터펌 등) 전진배치 실시
- (시우량 30mm ↑) CCTV·침수감지 알람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침수감지 알람장치 경보 시 즉시 출동(소방·경찰 협조) 현장확인 및 대응
- (시우량 50mm ↑) 우선대피대상자 연락체계* 가동 (유선, VMS 등)
 - * 강우가 장시간 지속, 호우경보가 지속되는 경우 사전대피 권유
 - * 임시주거시설 외 숙박시설 이용시 숙박비(1일 70천원) 및 식비(1식 9천원) 지원안내

< 00시·군 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

◆ 성남시 성남동 0000번지 : 성남시 재난안전관 000(031-729-3553)
 ※ 가이드라인 외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예비특보 발표시

- (예찰·안부활동) 우선대피대상자 0명 직접 방문 및 사전대피 권유 (일 2회)
 읍면동 직원은 우선대피대상자 0명 유선 안부 전화 실시 (일 2회)
- (사전연락) 대피대상자 0명, 조력자 0명, 관리사무소 0개소 상황알림 문자 발송
- (전진배치) 수방자재(차수판 0개, 모래주머니 0개, 양수기 0개, 워터펌 0개 등) 전진배치

② 시우량 30mm ↑

- (예찰강화) 호우주의보시 2시간, 호우경보시 1시간 간격으로 예찰 활동
 - ※ 반지하주택은 읍면동 현장지원인력, 자율방재단 예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예찰
- (대피명령) 부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명령 검토
 - 대피지원단,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강제대피 실시

2 지하차도

(단위 : 개소)

총 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불필요
	소계	기설치	설치완료	설치중	
道 294	216	44	105	67	78
00시					

< 경기도 대응 가이드라인 >

- (호우주의보시) CCTV·침수감지알람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시우량 30mm ↑) 4인 담당자 현장 예찰 및 상황보고
 - 15cm ↑ 침수시 즉시 차단(4인 담당자) 및 우회도로 안내*
 - * 교통통제 상황은 안전문자 발송을 통해 상황전파
 - ※ CCTV·침수감지알람장치가 없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 현장 배치 및 모니터링 실시

< 00시·군 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

◆ 평택 세교지하차도 : 평택시 도로관리과 000(031-8024-4775)

※ 가이드라인 외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결번호 명시, 읍면동 등 현장 배치

① (예비특보 발표시) 연락체계 정비 및 예찰활동 강화

- 지하차도 0개소, 4인 담당자 0명, 민간 용역 0명 상황공유를 위한 소통방(SNS) 개설
- 배수로 상태, 배수펌프 등 현장 확인 후 소통방(SNS 등)을 통해 상황 공유

② (시우량 30mm ↑) 현장예찰 강화 및 15cm ↑ 침수시 즉시 차단 및 우회도로 안내

- 호우주의보시 2시간 간격, 호우경보시 1시간 간격으로 예찰활동 실시 (4인 담당자)
- 15cm ↑ 침수시 4인 담당자(공무원, 경찰, 민간 등) 현장 배치 및 통제 실시
- ※ (공무원) 진입차단, 배수 조치 및 재난안전문자 발송 (市 재대본 협조)
- (경찰) 교통상황 정리 및 우회도로 안내 등

③ (복구상황 보고) 진입차단시점, 배수조치 내용, 향후 통행재개 시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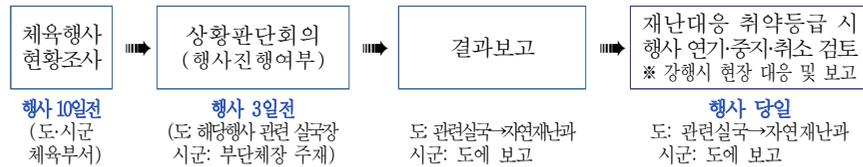
- 00지하차도 / 차단 07:00 / 배수펌프 동원(소방협조) / 재개 12:00 예상

4 폭염 대비 체육행사 분야

▷도 부서: 자연재난과로 보고
 ▷시군 부서: 시군 폭염담당 부서에서 총괄하여 도 자연재난과로 보고

□ 체육행사 관리

- (목적) 폭염 집중기간(7월중~8월말) 옥외 체육행사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현황조사 및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사전 대처 추진
- (사전홍보) 도·시군 체육부서는 여름철 폭염 집중기간^{7월중순~8월말}에 체육 행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체육회 등에 사전 협조 요청
- 체육행사 관리절차



□ 세부 추진사항

- ① (현황조사) 도, 시·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 행사(이하 “공공체육행사”)와 민간체육행사 현황조사(행사 10일전)

▷도 체육진흥과: 도 공공체육행사 및 시군 체육부서 조사자료를 자연재난과로 제출
 ▷시군 체육부서: 관할 시군 공공체육행사 및 민간체육행사 조사 후 그 결과를 도 체육진흥과 및 시군 폭염담당 부서로 제출

- ② (상황판단회의) 조사된 행사 계획에 대하여 「문체부 폭염 대응 가이드(붙임)」를 바탕으로 각 행사 진행 적정성 검토(행사 3일전) 및 후속조치 - 상황판단회의* 결과 위험 우려시 공공체육행사는 연기·취소 검토, 민간체육행사는 연기·취소 요청

* 도에서는 실국장,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이 각각 회의 주재

- ③ (결과보고) 상황판단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른 체육행사 계획 변경 사항(연기·취소 등) 보고

▷도: 도 공공체육행사는 주최·주관·후원부서에서 자연재난과로 통보
 ▷시군: 시군 공공체육행사는 주최·주관·후원부서에서 시군 폭염담당 부서로 통보하고, 시군 폭염담당 부서는 민간체육행사를 포함하여 도 자연재난과에 보고

- ④ (대응 및 상황보고) 공공 및 민간체육행사 강행 시 현장 대응인력 배치 및 상황보고(행사 당일)

종목별 재난취약등급 확인

■ 취약등급분류(지수)

외부환경지수 + 내부환경지수

외부 환경지수 분류기준		내부 환경지수 분류기준	
지수	경기시간(분)	지수	METS
1	1h 이하	1	1Mets 이하
2	1h 초과 3h 이하	2	1Mets 초과 3Mets 이하
3	3h 초과 6h 이하	3	3Mets 초과 6Mets 이하
4	6h 초과 9h 이하	4	6Mets 초과 9Mets 이하
5	9h 초과	5	9Mets 초과

①

내부환경지수(METS)란? 운동강도를 나타내는 표시법의 하나로, 각종 운동의 산소소비량을 배수로 나타낸 값을 의미합니다.

■ 대표 심의종목 MET지수 예시

종목	MET지수	종목	MET지수
마라톤(시합)	13.3	탁구(시합)	8.3
축구(시합)	10	수영(바다수영)	6.0
육상 허들(시합)	10	아구(일반)	5
자전거(강주)	10	골프(강주)	4.8
오리엔티어링(시합)	9	파크골프(시합)	3

※ 종목별 세부Mets 지수는 예비일 중합본 부록 참조

②

■ 재난대응 취약등급표

지수	1등급 고위험군	2등급 중위험군	3등급 저위험군
	7점 이상	5~9점	4점 이하
예시	자전거(4~15mph, 강주) 10Mets, 경기시간 6h - 외부환경지수 : 3점 - 내부환경지수 : 5점 - 합계 : 8점	농구(시합, 30m) 8Mets, 경기시간 1h - 외부환경지수 : 3점 - 내부환경지수 : 5점 - 합계 : 8점	파크골프(시합) 3Mets, 경기시간 3h - 외부환경지수 : 2점 - 내부환경지수 : 2점 - 합계 : 4점

④

1등급(고위험) 종목별 취약성 색깔을 확인해주세요!
스포츠활동에 있어 안전성을 위해 스포츠부 활용시간, 운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고위험)에서 3등급(저위험)까지의 재난대응 취약성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스포츠행사 운영의 취약성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재난대응 사전대비를 실시합니다.

2등급(중위험) 3등급(저위험)

폭염 발령 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발령 기준	주의보	경보
	33℃	35℃
다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②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다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②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대회 전	회의소집 대회 시행 검토 폭염 대비책 조치 또는 대회 연기/취소	회의소집 대회 시행 검토 대회 연기/취소(권장) 또는 폭염 대비책 조치
대회 당일	긴급회의소집 대회중지 대회실시 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폭염 대비책 강화	긴급회의소집 대회중지(적극권장) 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취소(적극권장)
결정 권자	행사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	행사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
비고	1등급 종목의 경우 경보 단계로 자체 격상 • 폭염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은 경보 단계로 자체 격상 • 환자 발생 시 경보 단계로 자체 격상	1등급 종목의 경우 경기 취소 적극 권장 • 폭염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은 경기 취소 적극 권장 • 환자 발생 시 경기 취소 적극 권장

⑤

<예시> 마라톤(시합)에 대한 재난대응 취약등급 판단

- ▶ 행사 당일 해당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예보(기상정보 확인)되며, 1시간~3시간 사이의 마라톤(시합)을 계획하는 경우
 - ① 외부환경지수(경기(대회)시간) 확인 ☞ 1시간~3시간 사이는 2점
 - ② 종목별 MET지수 확인 ☞ 마라톤은 13.3MET
 - ③ 내부환경지수 확인 ☞ 9MET 초과시 5점
 - ④ 취약등급 분류지수 계산(외부환경지수 2점 + 내부환경지수 5점 = 7점) 및 취약등급 확인 ☞ 취약등급 분류지수 7점 이상인 경우 1등급
 - ⑤ 행동요령 검토 및 조치 ☞ 대회 전 연기·취소(권장) 또는 폭염대비책 조치 ☞ 대회 당일 대회중지·취소(적극권장) 등 조치